

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2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기존 수익창출형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'15. 05. 법률자문결과 현행의 운영방식이 지방재정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경기침체 및 재활용품 단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
- 나. 예산지원형으로 위탁유형을 변경하고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의 안정적인 유지·관리를 담당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폐기물관리법 제5조(폐기물의 광역 처리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 - 예산지원형으로 전환 필요성
 - 수익창출형의 경우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존재('15. 05. 법률자문결과)
 - 근로자 후생복지 향상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형 전환 필요
 -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활용시장 악화로 재정적자 가속화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·운반에 관한 사항
-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에 관한 사항
- 폐전기전자제품의 새로운 수거체계 확보 및 구축에 관한 사항
-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
-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확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그 밖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위탁업체의 업무로 결정된 사항 등

라. 시설개요 현황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(송정동 73-36)
- 시설규모 : 처리능력 3,600톤/년, 부지면적 2,257.5 m^2 , 건축면적 809.95 m^2
- 주요업무 : 폐중소형 가전제품, 폐휴대폰 및 폐사무기기 등 자원화

〈시설 위치도〉



마. 민간위탁기간

- 위탁기간 : 3년(2018. 4. 1. ~ 2021. 3. 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계약 방법 : 공개모집으로 적격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
- 참여 조건 : 제한경쟁
 - 처리량 1200톤/년 이상 도시금속회수센터 또는 선별장, 그 외 유사시설 운영실적 보유
 -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득한 자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총 위탁비용 : 9,288백만 원

구분	운영원가	비고
총 위탁비용	9,288백만 원	물가상승률 반영
2018년 위탁비용	3,005백만 원	-
2019년 위탁비용	3,095백만 원	3% 인상 적용
2020년 위탁비용	3,188백만 원	3% 인상 적용

○ 2018년 운영원가 산출근거

- 운영인력 산정 : 일평균 처리량을 파악하여 필요인력을 산정하는 물량계산기준 사용
- ※ 2018년 추정수거량 ÷ 근무일수 ÷ 1일 일평균 처리량 = 인원 (단위 : 명)

구분	직인원	비고
경영 지원팀	센터장	1
	기획실장	1
	영업 부장	1
	생산 부장	1
	데이터관리	1
	홍보 및 교육	1
	총무/경리	1
경영지원팀 인원 소계		7
외부 선별반	외부선별반장	1
	외부선별원	9
외부선별반 인원 소계		10
생산 지원반	생산지원반장	1
	압축기조직원	1
	절단기조직원	1
	내부선별원	2
	구리작업원	1
생산지원반 인원 소계		6
생산반	생산반장	2
	분해생산원	29
생산반 인원 소계		31
수송반	대형수송원	2
	소형수송원	2
	지게차	2
수송반 인원 소계		6
합계		60

○ 운영원가 산정

구분		제조, 생활임금 혼용기준원가	비고		
비 정 산 비	인 건 비	직접노무비	1,910,466,984	처리물량 등 반영 60명으로 산정	
		간접노무비	-		
		인건비 소계	1,910,466,984		
	경 비	인적보험료	204,039,888		
		복리후생비	134,928,448		
		안전점검비	8,235,600		
		차량유지비	47,335,508		
		통신비	2,472,960		
		여비교통비	1,280,000		
		소모품비	14,093,147		
		도서인쇄비	100,000		
		안전관리비	11,270,347		
		지급수수료	2,013,600		
		경비소계	425,769,498		
	비정산비소계		2,336,236,482		
	정 산 비	경 비	전력비	17,193,216	
			폐기물처리비	94,166,640	
			용수비	680,539	
			수리수선비	28,467,326	
연료비			1,430,909		
건물보험료			4,562,319		
경비소계			146,500,949		
정산비소계		146,500,949			
순원가		2,482,737,431	비정산비+정산비		
일반관리비(5.4%)		126,156,770	비정산비x5.4%		
이윤(5%)		123,119,663	(비정산비+일반관리비)x5%		
총괄원가		2,732,013,863	(순원가+일반관리비+이윤)		
부가가치세(10%)		273,201,386	총괄원가x10%		
합계		3,005,215,249			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원안가결

자.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예산지원형으로 전환에 따라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불식
- 근로자 후생복지 향상 등 근로여건 개선 가능
-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자원순환기능 강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폐기물관리법 제5조

제5조(폐기물의 광역 관리) ①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(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)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방안 마련을 통한 성과평가 실시

- 적용구간을 8구간으로 설정하여 95%~105% 구간을 기준 설정
- 인센티브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페널티는 이윤의 비율을 차등 부여

목표 달성률	내 용	비 고
125% 이상	초과달성 수익금의 15% 지급	
115% 이상 ~ 125% 미만	초과달성 수익금의 10% 지급	
105% 이상 ~ 115% 미만	초과달성 수익금의 5% 지급	
95% 이상 ~ 105% 미만	-	
85% 이상 ~ 95% 미만	낙찰이윤률 대비 90% 지급	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및 인정 시 페널티 미부여
75% 이상 ~ 85% 미만	낙찰이윤률 대비 80% 지급	
70% 이상 ~ 75% 미만	낙찰이윤률 대비 70% 지급	
70% 미만	차기 입찰 참가 제한	

※ 작성자 : 자원순환과 재활용기획팀 윤인석 (☎ 2133-3690)